

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

1. 등록번호:
2. 등록명칭:
3. 주소(주사무소):

「부동산등기법」 제49조 및 「법인 아닌 사단·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」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